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48

발의연월일: 2021. 8. 12.

발 의 자: 남인순·김남국·김상희

김원이 · 강선우 · 서영석

전혜숙 · 정춘숙 · 최혜영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도에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취급자의보고 건수는 매우 많은 실정이며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실수 등을 할 개연성이 큼.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부과되어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誤記)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64조제2호).

또한,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 의 경우

제63조제1항제6호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3항까지(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 또는 누락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제2호 중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 또는 누락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약사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
	<u>되는 경우</u>
	<u>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u>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
	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3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1항부터 <u>제3항까지</u>	6. 제11조제1항부터 <u>제3항까지</u>
<u>및 제5항,</u> 제16조, 제28조제2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오기 또는 누락하거나 그 밖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 16. (생략)

②·③ (생 략)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 20. (생략)

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7. ~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u>.</u>
· 1. (현행과 같음)
2
<u>보고</u>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보고사항 일부 항
목에 대해 오기 또는 누락하
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3. ~ 20. (현행과 같음)